

##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8월 19일

###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 1. 제안이유

- 가. 최근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범죄 발생으로 시민의 불안감이 가중되어 안전한 도시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 나. 이에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켜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정함(안 제3조)
- 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 다.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함(안 제5조)

- 라.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음(안 제6조)
- 마.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7조)
- 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 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9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45, 팩스 032-440-8766, 이메일: jaemon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제 출 자   | 해당사항 | 찬반여부 및 사유 | 비 고 |
|---------|------|-----------|-----|
| ○ 주 소 : |      |           |     |
| ○ 성 명 : |      |           |     |
| ○ 연락처 : |      |           |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 4. 참고자료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박종우 의원 대표 발의)

|          |     |
|----------|-----|
| 의안<br>번호 | 728 |
|----------|-----|

발의연월일 : 2016. 8. 17.

발 의 자 : 박종우·김진규 의원

(찬성자 : 7명)

## 1. 제안이유

- 가. 최근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범죄 발생으로 시민의 불안감이 가중되어 안전한 도시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 나. 이에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켜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정함(안 제3조)
- 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 다.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함(안 제5조)
- 라.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음(안 제6조)
- 마.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7조)

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조성하거나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종합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인천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시행)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사업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시범사업
3. 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5.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1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지방경찰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기관, 시가 출자·출연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 등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관계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 도시·건축·조경·토목·교통·환경·디자인·조명·미술·색채·예술”을 “시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시의회 의원, 도시·건축·조경·토목·교통·환경·디자인·조명·미술·색채·예술·범죄예방”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관계공무원”을 “시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                                                                                                                                                                    |
|--------------|--------------------------------------------------------------------------------------------------------------------------------------------------------------------|
| 관계법령         | <div><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div>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li><li>- 제22조(조례)</li></ul></div> <div>“내용은 별지 작성”</div> |
| 관련법규<br>정비대상 |                                                                                                                                                                    |
| 관련자료         |                                                                                                                                                                    |

# 관계법령 발췌사항

##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 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관련)

## 1. 비용 발생 요인

-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 지급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업비용 발생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 위원회 기능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1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하며,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
- 건축, 도시, 환경 등에서 추진하는 안전과 관련된 범죄예방사업은 사업대상의 범위가 넓고 구체적으로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비용의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상황

## 4. 작성자

도시계획국 도시경관과장 안병희